

서울특별시의회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
----------	---

2016년 12월 19일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 7. 14. 박래학 의원 외 18명
- 나. 회부일자 : 2014. 7. 16.
- 다. 상정 일자 : 제271회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
2016년 12월 19일 상정·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박래학 의원)

가. 제안이유

-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직무수행에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청탁 등의 금지 및 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 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을 정함(제4조부터 제7조).
- 의원의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및 공용물의 사적으로 사용·수익을 금지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제한함(제8조부터 제12조).
-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활동비를 지원 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였으며,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 회의를 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는 사항과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의 제한 및 성희롱 금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13조부터 제18조).

-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9조부터 제20조).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자문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1조부터 제31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제정안의 취지 및 필요성

- 제정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 제23조에 따라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음.
※ 행동강령(2010.11 제정)은 지방의회 조례 제정과 관련 없이 법 효력을 가지고 있음.
-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별 자체 행동강령 조례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인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고, 위반 시 징계 등의 처벌을 받음.
- 그러나 각 지방의회별로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일부 규정이 조례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행동강령」의 구체적 적용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
※ 지방의회 위임 사항 : 직무관련자의 범위(제2조), 금품 수수 가능 유형 및 상한(제11조), 경조금품 수수 가능 유형 및 상한(제17조),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제22조) 등
- 특히, 지방의원의 행동강령위반 신고 접수 시에 의장은 조례로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해 처리토록 되어 있는 바, ‘의회별 행동강령’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행동강령」의 적용과 운영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음.
- 또한, 선출직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은 만큼, 지방의원이 지역주민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약속함으로써 주민

의 지지와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서울시의회 차원의 행동강령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하겠음.

[표]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조문 체계



○ 참고로,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의회는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에 있음(<참고자료> 참조).

2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의원의 회피 의무 등(안 제4조~제6조)

- 안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는 의원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의 사안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의원이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직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권개입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합한 취지라고 하겠음.
- 한편, 안 제5조(예산외 목적외 사용금지)는 의원이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사적 목적으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제정안 제7조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안 제7조는 의원이 집행부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보유하게 되는 심의·의결 권한을 제한하고 있음.
 - 이는 의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인이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해관계자나 이익집단이 위원인 의원에게 금품 제공 등 부정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됨.
 - 이 규정은 의원이 집행부 위원회 등의 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상정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자문·고문·검토 등의 활동은 가능함(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설명회자료, 2014, 국민권익위원회, p.10).
 - 그러나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의 권한 관계와 유기적 업무관계 형성 등의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첫째,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의 구체적 실행계획의 수립과 사업 평가 등에 있어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참여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갈등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둘째,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집행부 산하 위원회의 참여가 금지될 경우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참여해야 하는 바, 이는 의회운영의 근간인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하고, 상임위원회 위원 간의 업무 중복 및 불필요한 의견 갈등과 대립 등을 초래할 수 있음.
- 아울러 「지방자치법」(제35조제6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의원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를 회피하여 다른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관련 의원이 직업과 연관 있는 집행부내 해당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는 바, ‘직무 관련성’만을 기준으로 위원회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됨.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셋째, 의원이 집행부 산하 각종 위원회를 통해 정책결정과 집행, 평가과정에 참여하여 주민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원활한 정책집행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을 간과하였음.
 - 넷째, 집행부 소관 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는 의원은 위원회 구성 위원 중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한 바, 위원회 의결이나 결정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의정활동에 대한 과잉 제한으로 볼 수 있음.
- ※ 집행부내 도시계획위원회는 24명 위원 중 의원이 5명이고, 건축위원회는 18명 위원 중 의원이 1명이며,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선정위원회는 14명 위원 중 의원은 2명에 불과함.

○ 한편, 제9대 후반기 원 구성 직후 출범한 ‘의회 역량 강화 T/F’에서는 제7조 제1호(상임위 등 위원회 직무관련 회피)는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며, 상임위원회를 통한 의원 의견수렴 결과 100명의 응답자 중 73명이 제7조 제1호를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내역을 아래와 같음.

의원 의견수렴 결과

상임 위원수	응답결과			미응답
	계	제7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7조1호를 원안과 같이 존치한다.	
105	100	73	20	7
			7	5

- 참고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16개 광역의회 중 경기도의회, 충청남도의회는 동 조항 자체를 삭제해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충청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는 제7조 제1호(상임위 등 위원회 직무관련 회피)를 삭제하고 친인척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회피하도록 규정한 제7조 제2호만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음(<참고자료 참조>).
- 결론적으로 안 제7조의 입법 취지가 인정된다할지라도,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 기능을 토대로 한 유기적 협조 관계 및 상임위원회 간의 업무영역에 대한 상호 존중, 집행부 소관 각종 위원회에 대한 의원 참여 및 활동을 통한 순기능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4 야권 개입 및 직무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안 제8조~제11조)

- 제정안은 의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무관련 정보의 부당 이용 제한, 공용물의 사적 사용 금지와 함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의 취득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8조~제11조).
- 이 조항들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원의 청렴 의무를 이행하고 의정활동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는 적합한 규정이라 판단됨.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한편 안 제11조는 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 예외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데, 제2호와 제4호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6호는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음.
- 이 경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와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조례에 명문화해야 할 것임.

5 의원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안 제12조)

- 제정안은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거 등 의회 내의 선거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안 제12조).
- 의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선거에서 의원 간 금품 수수를 금지하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의회 내의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하여지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임.

6 국내외 활동 제한(안 제13조)

- 안 제13조는 의원이 의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 관련 국·내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의원이 국내외 활동 명목으로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부당하게 금전 등 지원을 받을 경우, 이들 기관·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왜곡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 이 조항은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만 제한하고 있으므로 의원의 개인 여행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의장을 승인을 받아 외부 기관으로부터 여비 등의 지원을 받더라도 사후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국내·외 활동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7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및 금전의 사용 금지 등(안 제4조 및 제6조)

- 안 제14조는 의원이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 외부 강의와 회의 등에 대가를 받고 강의·강연 등을 할 때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미리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이는 외부강의 등을 통해서 요청자로부터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 등을 수수할 경우, 해당 요청자의 부당한 영향력에서 의원이 자유롭기 어렵다는 측면을 반영한 것임.
- 다만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의 경우,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행동강령 간의 비례성 등을 감안할 때 예외조문의 도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한편, 안 제16조는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 및 부동산 무상 대여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금전거래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공무원 행동강령(제16조)에서는 부동산 무상의 범위를 ‘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바, 비교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공무원 행동강령

-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 수수 제한(안 제17조)

- 제정안은 친족, 동료의원 또는 소속 직원, 친목단체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관련자에게 의원의 경조사를 알리거나, 경조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17조).
- 이는 의원이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경조사 축·부의금을 받을 경우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렵고 후원금을 우회적으로 모금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됨.
- 다만, 의장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경조사 금품 등의 수수 가능 범위를 정하도록 한 조항(제2항)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 가액을 정하여 조례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9 위반행위의 신고·확인 등(안 제9조 및 제20조)

- 제19조는 누구든지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접수한 의장은 조례 위반 여부 및 처리 방향 등을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토록 의무화하였음.
- 신고인은 인적 사항과 신고 내용에 대해 비밀 보장을 받으며,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의장은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의 소명자료를 받아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의회윤리특별위원회 윤리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안 제20조는 의원이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이를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반환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장

에게 신고하여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조례를 위반하여 수령한 금품 등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나, 「공무원 행동강령」(제21조)에서는 ‘허용되는 금품 등의 범위가 정해져 있을 경우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즉시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 바, 형평성 차원에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10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21조~제32조)

- 제정안은 의원의 윤리 준수 및 부정부패 감시를 위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국내외 활동의 승인, 교육 및 상담 등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음(제정안 제21조 및 제22조).
- 자문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4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와 관련한 전심절차라고 볼 수 있으며, 행동강령 조례안 위반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심사·징계를 결정하는 구조임.
- 이는 의원에 대한 윤리 심사·감독을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의회가 자율적으로 행하는 종전의 방식에서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의원 윤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누구든지 법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윤리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하겠음.
- 한편, 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서울시 공무원, 의원, 정당의 당원을 제외한 독립적 외부인사로 위촉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서울시 공무원 또는 의원을 임명(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11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과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을 위해 의원이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을 정한다는 측면에서 그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와 관련하여서는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의회 차원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 론 요 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조례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조정하고, 안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와 관련된 사항 중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로 조정함.
- 안 제7조제1호(의원의 소관 상임위 등 위원회 직무관련 회피)를 삭제함.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기 타 : 해당 없음.

8.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

9.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
----------	------

제안년월일 : 2016년 12월 19일

제안자 : 윤영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조정하고, 안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와 관련된 사항 중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로 조정함.
- 안 제7조제1호(의원의 소관 상임위 등 위원회 직무관련 회피)를 삭제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로 한다.

안 제7조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정안
<p><u>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u></p> <p><u>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u>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 하여야 한다.</p> <p>1. <u>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u></p> <p>2. <u>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u></p>	<p><u>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u></p> <p><u>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u>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p>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의안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나. 서울특별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 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운전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②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원 간 금품등 수수 행위 금지)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

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의회소속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 ④ 의장과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 ①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이러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반

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 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 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21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4.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 하에 둔다.

-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되지 못한다.
 - 1.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 2. 의원
 - 3. 정당의 당원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인 되도록 한다.
 - 1. 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위원이 없거나 추천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2. 의장이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
-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기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⑥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23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7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위원이 제21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7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 ③ 제24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회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② 의장은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하여 자문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 내용
4. 자문 내용

제31조(자문료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상담과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②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소명서

소명자	성명		정당	
	소속위원회			
회피직무	<input type="checkbox"/> 의안심사 <input type="checkbox"/> 예산심의 <input type="checkbox"/> 행정감사·조사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회피원인	<input type="checkbox"/> 친족관계로 인해 회피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정한 직무활동을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내용				

20

소명자

(서명)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가자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금액(천원)	부담기관
	계		명			
20 신청자 (서명)						

국내외 활동보고서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위원회
활동 의원				
개요	목 적			
	지 원 기 관 (단체)		지 원 받 은 내 역	
	기 간		방 문 지 역 (방문기관)	
주요 활동 내역 <small>(일정 또는 활동내역별)</small>				
<p>「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p> <p style="text-align: center;">제출자 (서명)</p>				

영리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명		선거구분	지역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황	명칭				
	직위		영리행위기간		
	보수	(택) 연월원원	전화번호		
	영리장소 (주소)				
기타					
<p>「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20 . . .</p> <p style="margin-left: 100px;">신고자 (서명)</p>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직 위	
	소속위원회		정 당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	성 명		주 소	
	연 락처		청구인 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20 청 구 자 (서명)				

